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1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4. 2.

김 정 희 의원

# 제안 설명서

제안자 : 김정희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주민조례청구서 등에 관해, 안 제5조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는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는 청구인명부에 관해, 제8조에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는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에는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에는 대표자 변경에 관해, 제14조에는 청구의 철회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에는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의 사무협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14
----------	----------

발의연월일 : 2024. 2. 2.

발 의 자 : 김정희, 이진환, 박종길,  
권숙자, 손범구, 김장관,  
박정환, 서보영

###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안 제2조)
- 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안 제3조)
- 다.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안 제4조 ~ 제5조)
- 라.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안 제6조)
- 마. 청구인명부 및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안 제7조 ~ 제8조)
- 바.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0조)
- 사.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안 제11조)
- 아. 청구의 수리 및 각하(안 제12조)
- 자.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안 제13조 ~ 제14조)
- 차.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사무협조(안 제15조)

###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 나. 비용추계 :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

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 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1명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법 제7조의 수임

자를 말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시 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달서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법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표자 변경)**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공동대표자용 [ ]주민조례청구 · [ ]주민조례청구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신청서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비고
						선정 대표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의회 의장

직인



#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생년월일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2조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